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 포함 등〉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52호)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7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 1. 이준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9.

다. 회 부 일 : 2024. 12. 2.

### 2. 이인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6.

다. 회 부 일 : 2024. 12.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이준석의원안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2. 이인영의원안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고(이준석·이인영의원안 제2조),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이준석의원안 제4조).

| 현행                                                                                                                                                                                | 이준석의원안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br>-----.                                                           | 제2조(정의) -----<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 | 2. -----<br>-----<br>-----<br>-----<br>-----<br>-----<br>-----<br>-----<br>-----<br>-----. | 2. -----<br>-----<br>-----<br>-----<br>-----<br>-----<br>-----<br>-----<br>-----<br>-----. |
|                                                                                                                                                                                   | <단서 삭제> 이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및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 -----.                                                                                     |
|                                                                                                                                                                                   |                                                                                            | <단서 삭제> 이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대출의 제공 등을 가장                                              |

| 현행                                                                                                                                                                                                                                                                                                                         | 이준석의원안                                                                                                                                                                                                                                                                                                                                                                |                                                                                                   |
|----------------------------------------------------------------------------------------------------------------------------------------------------------------------------------------------------------------------------------------------------------------------------------------------------------------------------|-----------------------------------------------------------------------------------------------------------------------------------------------------------------------------------------------------------------------------------------------------------------------------------------------------------------------------------------------------------------------|---------------------------------------------------------------------------------------------------|
| <p><u>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lt;후단 신설&gt;</u></p> <p>가. ~ 라. (생략)</p> <p>2의2. ~ 7. (생략)</p> <p>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u>&lt;신설&gt;</u></p> <p>3. ~ 5. (생략)</p> <p>② ~ ④ (생략)</p> | <p><u>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u></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2의2. ~ 7.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급정지) ① -----<br/>-----<br/>-----<br/>-----<br/>-----.</p> <p>1.·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p><u>한 행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u></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2의2. ~ 7. (현행과 같음)</p> |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은 자금의 송금·이체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①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②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사기범 계좌)로 자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먼저 피해자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자금의 송금·이체·출금 중단)를 하여 피해를 방지함.
-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됨.

[그림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자료: 경찰청)

[표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 절차               | 내용                                                                                            | 근거조항  |
|------------------|-----------------------------------------------------------------------------------------------|-------|
|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 §3①   |
| ②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 실시<br>※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근거로 지급정지도 가능 | §4①   |
| ③ 지급정지 통보        |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 §4②   |
|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 §5①   |
|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 §13의2 |
| ⑥ 채권소멸절차         |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 §5②   |
|                  |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 §9①   |
| ⑦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 §10①  |
|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8    |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2020. 6., 18쪽 재구성)

-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병과가능),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도록 규정함.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 것은 이 법이 처음 제정된 2011년 당시 반영된 것으로<sup>1)</sup>,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이 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sup>2)</sup>.

□ 이에 개정안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새로운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또는 투자사기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1) 제294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9. 10.)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주현 기타 절차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전화금융사기의 개념 관련입니다.  
의원님들 안은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TF안은 이 법이 적용되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위를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물품판매 사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정지 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임영호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사철 박 위원님, 이것은 취지하고 맞는 것입니까?  
○박선숙 위원 예, 맞습니다.

2)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 사기범의 범죄 수익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범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짜 안전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볼 경우 이 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형법」상 사기죄 등<sup>3)</sup>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됨.
- 참고로, 온라인 중고 거래 관련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약 8만 4,000여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표 2] 온라인 중고 거래 관련 사기 범죄 발생 건수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발생건수 | 84,107 | 79,052 | 78,320 | 100,539 |

(자료: 경찰청)

3)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 다른 유형으로는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자들이 가짜(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또는 해외선물 등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볼 경우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참고로 대법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설 HT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투자금은 투자수수료 등과 달리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결정<sup>4)</sup>하였음.
-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거래 수수료<sup>5)</sup> 편취와 같은 유형은 ‘재화의 공급과

4)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지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상 이익 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또한 이준석의원안은 금융회사 지급정지 조치의 요건으로 '전자 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sup>6)</sup>, 자체점검을 통한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

5) 2심 판례에 따를 경우 투자 '거래 수수료' 편취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인데, 예치금은 피해자들이 해외선물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돈이다. 즉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치7),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8)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송금이나 이체 행위 외의 원인행위(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시간 내 고액인출이 이루어지는 등 긴급 대응이 요구되고, 일방의 편취행위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 사기는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한 금융회사의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포함될 경우,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정지 등의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9)도 제시되었음.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의 의견임.

- 다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허위로 지급정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sup>10)</sup> 지급정지 제도 등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고, 사기통합신고대응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지난 제21대국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
  -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으나<sup>11)</sup>,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와 유사한 (가칭)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임.
  -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건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는 수사권한이 없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을 추가할

10)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11) 통합신고대응원 신설에 따른 사기범죄 대응의 실효성 문제, 특정사기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전체회의 계류

경우 사기이용계좌 의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남용의 소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08 |